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지권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16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내가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거의 매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반려동물들을 접하고 있고 친구나 직장 동료의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귀여운

반려동물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따뜻한 집사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려동물들보다 길 거리에 버려져 힘들게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고양이입니다. 일명 길냥이라고도 합니다. 이 길냥이들은 사람에게 버려진채 생존을 위해 쓰레기를 뒤집고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등 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언제부터인가 이런 길냥이들을 케어하는 일명 캣맘들의 생겨나고 모임이 결성되어 먹이를 주고 회비를 털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등 보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동네 주민들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고 회원들 개개인이 회비를 모아서 활동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 이에 제2116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와 구청 등에서 지원하는 중성화 수술과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해진 기간 외에도 민원 등 필요시에는 중성화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포획 장소에만 한정하여 방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캣맘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놓여지는 길고양이 밥그릇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주변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지정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도구를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규격화 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 또한 민간단체 대행이 가능케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